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68

발의연월일: 2025. 3. 26.

발 의 자:김병기·장종태·강훈식

박지원 · 강준현 · 한준호

김남근 • 허 영 • 김주영

조계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목적 및 역할을 규정하고, 해당 도서관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.

전문도서관은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, 특수도서관은 병원, 병영, 교정시설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,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,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근거 규정이 없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전문도서관·특수도서관	제41조(전문도서관·특수도서관
의 설치 등) ① ~ ③ (생 략)	의 설치 등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
	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・운영에
	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	령으로 정한다.